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184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이 현 중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수색 · 구조 · 구난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 신설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6. 1. 20.
3. 회 부 일 : 2026. 1. 2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은 인명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하는 고위험·고난도 임무로서 긴급성과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구조·구급대원의 신속한 판단이 요구됨. 이러한 특성상 수색·구조·구난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며 이에 대한 제도적 보호는 구조활동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필수요소라 할 수 있음.

현행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형의 감면 규정을 두어 구조·구급대원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적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반면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은 동일하게 인명구조를 목적으로 하는 수색·구조 활동을 규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

아 법률 간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활동 역시 긴급성과 공익성을 고려하여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직무 수행으로 발생한 결과에 대해서는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구조·구급대원의 법적 불안을 완화하고 구조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수색·구조·구난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규정 신설

개정안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 또는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난구조업무를 한 자가 수색·구조·구난활동으로 인하여 구조대상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활동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5조의2(수색·구조·구난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색·구조·구난활동으로 인하여 구조대상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수색·구조·구난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위급상

	<u>황에 처한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u> <u>2. 제29조제2항에 따라 수난구호업무를 한 자</u>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의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
--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구난활동¹⁾은 긴급성과 위험성이 높은 임무로서, 기상 변화, 시야 확보의 어려움, 구조 대상자의 상태 불확실성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수행됨.

1) 【최근 5년간 수색·구조·구난활동 현황】

구 분	발 생		구 조		구 조 불 능*			
	선 박 (척)	인 명 (명)	선 박 (척)	인 명 (명)	선 박 (척)	인명피해		
						계	사 망	실 종
계	20,549	112,750	20,159	112,400	390	350	251	99
2025년 (잠정치)	4,607	26,038	4,526	25,967	81	71	53	18
2024년	4,213	23,840	4,155	23,747	58	93	62	31
2023년	4,068	21,666	3,990	21,606	78	60	47	13
2022년	3,779	21,032	3,709	20,972	70	60	46	14
2021년	3,882	20,174	3,779	20,108	103	66	43	23

주) 구조불능 선박 : 침몰 또는 화재 등으로 효용성 상실

※ 자료: 해양경찰청

특히 구조·구급대원은 제한된 정보와 시간 속에서 즉각적인 판단과 조치를 요구받으며,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성을 지니고 있음.

이러한 점에서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일정 수준의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구조활동의 안정적·지속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볼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법은 수상 조난사고에 대한 수색·구조·구난활동의 수행체계와 절차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직무 수행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한 형의 감면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이로 인해 구조·구급대원은 공익적 목적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며, 이는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조 조치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구조·구급활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위험성과 공익성이 유사한 구조·구급활동임에도 법률 간 보호 수준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적 형평성 측면에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

【개정안 및 유사입법례 비교】

구분	수상구조법 (김성원의원안)	119법 (제24조) ²⁾	응급의료법 (제5조의2) ³⁾
감면 대상	구조본부장의 지시 또는 요청에 따라 구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 (제16조제1항)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제4조제3항)	응급의료종사자 및 응급처치 제공의무자가 아닌 사람
	구조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수난구조업무를 한 자 (제29조제2항)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한 자	업무수행 중이 아닌 응급의료종사자, 응급처치 제공의무자
관련 활동	수색·구조·구난활동으로 인해 구조대상자 사상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해 요구조자 사상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
주의 의무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좌 동)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감면 범위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 형의 감경	(좌 동)	민·형사책임 면제, 사망 시 형사책임 감면

- 2)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4조(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한 자
-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한 응급처치
 - 가. 응급의료종사자
 - 나. 「선원법」 제86조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 담당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
 2. 응급의료종사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이 받은 면허 또는 자격의 범위에서 한 응급의료
 3. 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한 응급처치

이에 개정안은 수상 수색·구조·구난활동의 긴급성·위험성 및 공익성을 고려하여, 직무 수행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초래된 결과에 대한 형사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구조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강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은 형의 감면 대상으로 “제16조제1항4)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구조대상자를 구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 자” 및 “제29조제2항5)에 따라 수난구조업무를 한 자”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지시 또는 요청을 받거나 종사명령을 받고 수난구조 활동을 한 사람만 형의 감면 대상이 되는 반면,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은 직무상 구조·구급대원⁶⁾뿐만 아니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누구

-
- 4)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구조본부 등의 조치) ① 제15조에 따라 조난사실을 신고 또는 통보받거나 인지한 관할 구조본부의 장이나 소방관서의 장은 구조대에 구조를 지시 또는 요청하거나 조난현장의 부근에 있는 선박등에게 구조를 요청하는 등 수난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수난구조를 위한 종사명령 등) ①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조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사람 또는 단체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선박, 자동차, 항공기, 다른 사람의 토지·건물 또는 그 밖의 물건 등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노약자, 정신적 장애인, 신체 장애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조업무에 종사명령을 받은 자는 구조본부의 장 및 소방관서의 장의 지휘를 받아 수난구조업무에 종사하여야 한다.
- 6)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4조(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2.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조·구급활동을 한 자

제13조(구조·구급활동) ① 소방청장등은 위급상황이 발생한 때에는 구조·구급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인명구조, 응급처치 및 구급차등의 이송, 그 밖에 필요한 활동을 하게 하여야 한다.

든지) 형의 감면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을 볼 때, 개정안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도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둘째, 개정안은 수색·구조·구난활동 전반에 대하여 형의 감면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중 “수색”은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하며, “구난”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에 관한 원조를 위한 활동으로서,⁸⁾

그 자체로 구조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형의 감면 규정은 구조활동과 같이 인명에 대한 직접적 처치가 수반되어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7)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4조(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한 형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구조·구급활동으로 인하여 요구조자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그 구조·구급활동 등이 불가피하고 구조·구급대원 등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6조부터 제268조까지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한 자

제4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③ 누구든지 위급상황에 처한 요구조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방기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려야 하며, 119구조대·119구급대·119항공대(이하 “구조·구급대”라 한다)가 도착할 때까지 요구조자를 구출하거나 부상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8)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

8.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9.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셋째, 개정안 부칙의 적용례(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44조⁹⁾의 죄를 범한 때부터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44조는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에 대한 벌칙 조항으로서,

신설 조항이 「형법」상 과실치사상죄(제266조~제268조)에 대한 감면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인용 조문의 오기로 보이고, 형벌규정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에는 신법을 적용하기 위한 별도의 적용례를 둘 필요가 없으므로,¹⁰⁾ 부칙의 적용례는 삭제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해양경찰청은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나, 「응급의료법」과 같이 형의 감면 요건에 “고의”를 추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로 보호 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¹¹⁾ 부칙의 시행일(부칙 제1조)은 제도적·행정적 준비기간이 요구되지 않고 신속하게 시행될 필요가 있으므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425

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벌칙)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행하는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 국회사무처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개정증보판)”, 2024.5., p.894.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死傷)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傷害)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 (이하 생략)